

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2. 3

다. 상정일자 : 2004. 2. 3

(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규문

나. 제안사유

-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와 내용을 변경하고,
-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제2조 포상대상 조항의 시외거주지를 "타 시군 거주자"로 불합리한 용어변경
- 제3조에 포상을 타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
- 제9조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"인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"를 거치도록 했던 것을 "공적심사위원회 심의"를 거치도록 개정
-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
 -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: 5명이내
 - 위원장 : 부군수
 - 부위원장 : 총무과장

- 위원 : 3명이내
- 기타 문구수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구수성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새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서, 개성상의 질차상,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부 :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시외거주자”를 “타 시군 기주자”로 한다.

제3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포상을 타기관·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”

제9조 제2항중 “인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”를 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한다.

제10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14조(종전 제10조)중 “정기적으로”를 “반기말에 정기적으로”로 하며, 제10조 내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공적심사위원회)①표창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, 위원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1조(위원장등의 직무)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)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,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회에 당해위원과 관련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.

제13조(간사)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포상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암
(신설)	<u>제13조(간사)</u>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②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제10조(포상시기) 포상은 <u>정기적으로</u>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	<u>제14조(포상시기)</u> 반기말에 정기적으로
제11조(이중 포상금지)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	<u>제15조</u> -----
제12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	<u>제16조</u> -----
제13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.	<u>제17조</u> -----